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년월일 : 1998. 12. 2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현행 시·군마다 다르게 제정 운용되고 있는 기구·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시·군별로 통일을 기하고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실·과장의 직급 등 규정(안 제2조)
- 다. 실·과의 설치(안 제3조)
- 라. 직속기관의 설치 및 소관사무 규정(안제4조 내지 제10조)
- 마. 사업소의 설치 및 소관사무의 규정(안제11조 내기 제13조)
- 바. 읍·면 및 출장소의 설치와 소관사무의 규정(안제14조 내지 제19조)
- 사. 평창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평창군보건진료소설치에 관한조례, 평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및 평창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는 폐지함.
(안 부칙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 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표준안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 청

제3조 (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실·종합민원실·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관광과·환경복지과·임업경영과·건설과·도시경제과를 둔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 가.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 나.군 의회 운영관련 업무
- 다.법무·소송행정에 관한 업무
- 라.예산 편성.운영 및 집행에 관한업무
- 마.공보행정 및 군정홍보에 관련된 업무
- 바.통계에 관련된 업무
- 사.감사 및 회계검사와 관련된 업무

2. 종합민원실

- 가.민원사무에 관한업무
- 나.부동산 관련 업무
- 다.지적 관련업무
- 라.운수행정에 관련된 업무
- 마.보건위생에 관련된 업무

3. 자치행정과

- 가.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업무
- 나.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
- 다.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 교육에 관한업무
- 라.행사.의전에 관한업무
- 마.병무.민방위 관련업무
- 바.정보 통신에 관련된 업무

4. 재무과

- 가.지방세의 부과징수 관련업무
- 나.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업무
- 다.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 라.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

5. 문화관광과

- 가.문화예술에 관한업무
- 나.관광과 관련된 업무
- 다.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업무

6. 환경복지과

- 가.환경행정 및 시설에 관한업무
- 나.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사항
- 다.사회복지 및 주민 의료보호에 관한사항
- 라.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사항

7. 임업경영과

- 가.산지이용 및 조림사업에 관한업무
- 나.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업무
- 다.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 라.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련된 업무

8. 건 설 과

- 가.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
- 나.치수 및 수자원개발 업무
- 다.도로.교량과 관련된 업무
- 라.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업무
- 마.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업무
- 바.지역단위 재난.재해관련업무
- 사.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9. 도시경제과

- 가.도시건설에 관한 모든업무
- 나.토지수용 및 택지개발 업무
- 다.광고물.건축 관련업무
- 라.상하수도 관련업무

- 마.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
- 바.가스시설 공사 및 관련업무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4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 (의료원장 등) ①의료원에 원장 및 과·부장을 두며, 보건지소에 지소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 ②원장은 군수의, 과·부장, 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 (소관사무) ①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 (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센터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6번지에 둔다.

제8조 (소장 등) 센터에 소장 및 과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경영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다. 농작물 병충해 등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

라.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마. 양곡관리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2. 축산경영과

가.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나.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업무

다.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업무

라.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업무

3. 기술개발과

가. 농촌지도 및 생활개선사업 관련업무

나. 농민교육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도

다. 지역특화작물 개발

라. 영농기계화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제10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군에 위생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소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25-3번지에 둔다.

제12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노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노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발전
3. 분노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5장 읍·면

제14조 (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출장소

제17조 (설치) ①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8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및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 (소관사무)출장소장은 제15조의 직무중 호적·주민등록업무 및 민원서류발급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평창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평창군 보건진료소설치에관한조례, 평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및 평창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 4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평창군보건의료원	평창읍 중부리 504	평창군 일원
미탄보건지소	미탄면 창리 617	미탄면 일원
방림보건지소	방림면 방림리 1300	방림면 일원
대화보건지소	대화면 대화리 1171-1	대화면 일원
봉평보건지소	봉평면 창동리 366-3	봉평면 일원
용평보건지소	용평면 장평리 380	용평면 일원
진부보건지소	진부면 하진부리 166-11	진부면 일원
도암보건지소	도암면 횡계리 335	도암면 일원
고길보건진료소	평창읍 고길리 237	고길리, 노른리, 조동리, 이곡리 지동리
다수보건진료소	평창읍 다수리 335	임하리, 뇌운리, 계장리, 하일리, 다수리 원당리
마지보건진료소	평창읍 마지리 666-1	마지1,2리, 조둔리, 도둔리, 응암리 대상리, 대하리
계촌보건진료소	방림면 계촌리 1496-3	계촌1,2,3,4,5,6리, 운교1,2리
가평보건진료소	대화면 하안미리 415-2	하안미3,4,5,6리
개수보건진료소	대화면 개수리 744	개수1,2리, 상안미1,2리
신리보건진료소	대화면 신리 278-11	신1,2,5리
무이보건진료소	봉평면 무이리 66-1	무이리 1,2리 흥정리, 원길2리
면은보건진료소	봉평면 면은리 798	면은1,2리, 진조리,
등대보건진료소	봉평면 유포리 75-1	유포1,2,3리, 재산2리, 백옥포2리
속사보건진료소	용평면 속사리 459-4	속사1,2,리, 노동리, 이목정1,2리
두일보건진료소	진부면 두일리 137	두일리, 척천리, 탐동리
거문보건진료소	진부면 거문리 246-1	상월오개1,2리, 신기리, 봉산리 마평1리
수항보건진료소	진부면 수항리 268	마평2리, 화의리, 정전리, 막동리 수항리
유천보건진료소	도암면 유천리 747-1	유천1,2,3리, 병내리
용산보건진료소	도암면 용산리 392	용산1,2리, 수하리

[별표 2]

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 (제17조관련)

출장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방 립 면 계촌출장소	평창군방림면계촌리 1410-4	방림면 계촌1,2,3,4,5,6리 운교1,2,3리 일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④市の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한다. <新 設 94.3.16>

⑤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 市の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 團體의 長을 補佐하여 事務를 總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事故가 있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 市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02條 (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 機構을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 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 3.16, 94.12.20>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 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 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 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化 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4.3.16>

⑤第4項에 規定된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 定에 불구하고 5級이상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 屬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6級이하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 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5>

第3節 소속行政機關

第104條 (直屬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추 56)

80

大統領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消防機關·教育訓練機關·保健診療機關·試驗研究機關 및 中小企業指導機關등을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②削除 <94·12·20>

第105條 (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第1項의 定員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第106條 (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107條 (合議制行政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議制行政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4節 下部行政機關

第108條 (下部行政機關의 長) 自治區가 아닌 區에 區廳長, 邑에 邑長, 面に 面長, 洞에 洞長을 둔다.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第109條 (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①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이 任命한다.

②邑長·面長·洞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任命한다. <改正 94·3·16>

③削除 <94·3·16>

第110條 (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邑長·面長은 市長 또는 郡守의, 洞長은 市長(區가 없는 市の 市長을 말한다)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第26編 保健·醫事 第3章 醫事·血液管理 養漁村等保健醫療을 위한特別措置法

이 법의 제

第11條 (報酬等) ①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軍人報酬의 한도안에서 報酬 및 職務遂行에 필요한 旅費等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酬등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公衆保健醫師의 修練) ①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 1年の 범위내에서 專攻醫의 修練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練期間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公衆保健醫師의 修練許可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3條 (資格停止) ①保健福祉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5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93·12·31, 97·12·13 法5454>

②削除 <97·12·13 法5453>

第14條 (服務監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 管轄地域안에 근무하는 公衆保健醫師를 指導·監督한다.

第3章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員

第15條 (保健診療所の 設置·운영) ①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の 市長을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한다. 다만, 市·區의 管轄區域안의 島嶼地域에는 당해 市長·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 郡地域안에 있는 保健診療所의 行政區域이 行政區域의 변경등에 의하여 市 또는 區地域으로 編入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 또는 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改正 94·12·22, 97·12·13 法5454>

②保健診療所에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保健診療所의 設置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6條 (保健診療員의 資格) ①保健診療員은 看護師·助産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는 24週 이상의 職務教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추 94)

980

□지역보건법

第36編 保健·醫事 第1章 行政組織·通則 地域保健法

한 것에 승하여야 한다.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

第4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①地域保健醫療計劃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保健醫療需要 測定
2. 保健醫療에 관한 長短期 供給對策
3. 人力·組織·財政等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
4. 保健醫療의 傳達體系
5. 地域保健醫療에 관련된 統計의 蒐集 및 정리

②第1項에서 規定한 것 외에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수립방법·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關聯機關·團體 등에 대하여 人力·技術 및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6條 (地域保健醫療計劃 施行結果의 評價)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 또는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結果를 評價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필요한 경우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第7條 (保健所의 設置) 保健所(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8條 (保健醫療院) ①保健所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病院의 요건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保健醫療院을 設置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 (保健所의 業務)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안에서 행하여지

(추 71)

119-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97·2·4, 98·8·31>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2·4, 98·8·31>

제2장 시·도의 기구

제7조 (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5·12·28, 98·8·31>

②삭제 <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8, 98·8·31>

제8조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5·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선 95·5·16>

제9조 (과·담당관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2·4, 98·8·31>

제3장 시·군·구의 기구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8·8·31>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8·31>

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과·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8·31>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8·31>

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선분개정 97·2·4]

제10조의2 (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보좌기관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97·2·4]

제 4 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등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98·8·31>

(추 100)

"600년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1(0361)51-3320, 행정2224, 2295 / 전송(0361)250-2495

자치행정과 과장 : 이방용 담당 : 지방행정사무원 최순규 담당 : 이주익

문서번호 자치 12200-1669

시행일자 1998.10.23.(1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선 발	과 장	이 주 익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98.10.23	결	
수 번호	1645	계 등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최 순 규			

제목 조례·규칙모델 표준안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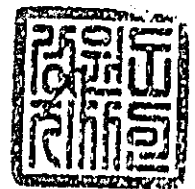
1. 자치 12200-1464('98. 9.15)호와 관련 됩니다.

2. 상기호로 시달한 바 있는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 대하여 일부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磅礴하니 당초시안에 의해 조례·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있는 자치단체는 보완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모델 표준(안) 1부(MOHA망으로 승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지원국장 박 수 준



수신처 더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년월일 : 1998. 12. 2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제호를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계제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계제를 폐지하며,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사무과의 설치규정(안 제2조)
- 다. 사무과장을 두도록 하고 임무를 규정(안 제3조)
- 라. 전문위원의 두고 역할을 규정함.(안제4조)
- 마.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함.
(안 제5조)
- 바.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평창군규칙으로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 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표준안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평창군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第80條 (懲戒의 종류 및 議決) ①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日이내의 출석정지
4. 除 名

②除名에는 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81條 (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懲戒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12節 事務機構와 職員

第82條 (事務處등의 設置) ①市·道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處를 둘 수 있으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과 職員을 둔다. <改正 91.12.31>

②市·郡 및 自治區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1.12.31>

第83條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

②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 <改正 94.3.16>

第84條 (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等) ①事務處長·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은 議員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처리한다. <改正 91.12.31>

②事務職員의 任用·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을 適用한다.

第6章 執行機關

第1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第1款 地位

"600년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1 (0361)51-3320, 행정2224,2295, 전송(0361)250-2495

자치행정과 과장 : 이방응 담당 : 지방행정사무관 최순규 담당 : 이주익

문서번호 자치 12200-1659

시행일자 1998.10.22.(1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선결	과장 이방응	지	
접	일자	시	
	시간 98.10.23	결	
수	번호 16488	적	
처	리 과	공	
담	당 자 최순규	람	

제목 조례·규칙모델 표준안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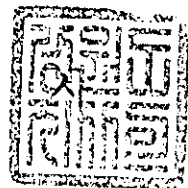
1. 자치 12200-1464('98. 9.15)호와 관련 됩니다.

2. 상기호로 시달한 바 있는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 대하여 일부 보완하여 설명과 같이 통보하니 당초시안에 의해 조례·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있는 자치단체는 보완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모델 표준(안) 1부(MOHA방으로 송부) 들.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지원국장 박수준



수신처 더